



Council on Children and Families

KATHY HOCHUL
주지사

RENÉE L. RIDER
사무국장

정보 입수 및 공개 승인서

해당인 성명 _____

생년월일 _____

부모/법적 보호자 _____

주소 _____

전화번호/이메일 주소 _____

본인, _____은(는), 적절한 서비스를 받는 데, 도움이 되도록

부모/법정 후견인(또는 18 세 이상인 경우 본인)

아동가족 심의회(Council on Children and Families)에 다른 기관 및 조직에/으로부터 명백히 필요한 정보를 입수 및/또는 공개하도록 승인합니다.¹ 본인은 본 승인서 양식에 서명하는 결정은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며, 본인의 철회가 본 승인서에 응해 이미 공개된 정보에 적용되거나 그러한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언제든지 서면으로 본 승인서를 철회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.

본인은 또한 입수 및 공개되는 정보는 본 양식 뒷면에 명시되어 있는 특정 문서 또는 정보 교환으로 한정됨을 이해합니다.

본 승인서는 보다 이른 날짜나 사건이 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양식이 서명된 날짜로부터 1 년 후 자동으로 만료됩니다.

본 승인서가 만료되는 날짜 또는 사건 또는 조건에 대한 상세 기술

(뒷면에 계속)

¹사회복지법(Social Services Law) § 483-b 에 따라, Council on Children and Families 는 아동이 본인의 필요를 충족하는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뉴욕 주 보건, 복지 및 교육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. 더 나아가, 이에 반하는 주법의 기타 조항에도 불구하고, 심의회는 연방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까지 심의회 목적과 운영에 적합한 모든 정보를 심의회에서 요구하는 형태 및 방식 그리고 시점에 심의회에 제출하도록 모든 협력 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그러한 협력 기관은 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본인은 본 승인서에 대해 무엇이든 질문하거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. 본인은 본 승인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고 서명을 거부한다고 해도 서비스나 대우를 받을 자격에 영향이 없지만, 이는 Council on Children and Families 의 지원 능력을 저해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.

본인은 정신위생법(Mental Hygiene Law) § 33.13(c)(7)에 따라 해당 정보에 대한 명백한 필요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본 승인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, 단 그러한 공개는 특정 개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경우에 한합니다.

본인은 일체의 공표/공개가 연방 교육권 및 개인정보법(Federal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— FERPA) 및 교육기록의 공개를 관장하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(20 USC 1232g, 34 CFR 파트 99) 및 알코올 및 약물남용 환자기록의 기밀 보장을 관장하는 연방 규정(42 CFR 파트 2)에 의해 구속됨을 이해합니다. 이에 덧붙여, 본인은 일체의 공표/공개는 개인 건강정보의 공표를 관장하는 연방 1996 년 건강보험 양도 및 책임법(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— HIPAA)(45 CFR 파트 160 및 164)에 의해 구속되며 이는 또한 본인의 건강 및 임상 정보를 수신하도록 승인을 받은 제 3 자가 의료 서비스 제공자나 건강 플랜이 아닐 경우 Council on Children and Families 가 이러한 경우에 포함됨), 공개된 정보는 재공개될 수 있고 더 이상 연방 개인정보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임을 이해합니다.

본인은 본 승인서가 공중보건법(Public Health Law)의 27-F 조에서 관장하는 에이즈 및 HIV 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승인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합니다.

본인은 본 승인서가 기록 또는 정보의 기밀 보장을 관장하는 일체의 연방 또는 뉴욕 주 법률 또는 규정을 대체하지 않음을 이해합니다.

아래에 입수 또는 공개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제한 사항을 표시하십시오.